

# 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발의일 : 2022. 2.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통장 위촉과 연임 관련 단서 규정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통장의 위촉과 연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수정함(안 제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과 연임관련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법규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